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3. 5. 16 선고 2022가단1746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C

소송대리인 D

변 론 종 결 2023. 4. 4.

판 결 선 고 2023. 5. 16.

주 문

1.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가. 소외 E(주민등록번호 1 생략)와 피고 사이에 2022. 3. 18.자로 체결한 자동차매매계약을 취소하고,

나. 피고는 소외 E에게 별지목록 기재 자동차에 대하여 2022. 3. 18.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접수 F로 마친 명의이전등록 말소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위적으로 주문 제1항 및 예비적으로 피고 C은 원고에게 금 4,525,05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1. 9. 14. 소외 E와의 사이에 원금 12,000,000원, 대출기간 39개월, 대출이율 연 14%로 하는 여신거래계약을 체결하고 E에게 위 금원을 대출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대출금 채권에 관하여 E를 상대로 11,458,436원과 그 중 11,174,892원에 대하여 2022. 5. 3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로 계산한 돈의 지급을 명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22. 5. 31.자 2022차전745호 지급명령).

다. E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22. 3. 18. 자신의 부친인 피고와의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같은 날 피고 명의로 명의이전등록을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6호증의 갑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22. 3. 18. 당시 원고의 E에 대한 대출금 채권(원금 11,174,89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존재하고 있었으므로 이는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에게 이 사건 자동차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와 같이 E는 원고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자동차를 피고에게 이전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으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는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들을 해할 것을 알았다고 할 것이며 채무자인 E에게 위와 같은 사해의사가 인정되는 이상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는, E가 이 사건 자동차를 구입할 당시인 2015. 9. 23.경 500만 원을 대여하였는데, E가 위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하겠다고 하고 E가 더 이상 이 사건 자동차를 보유하며 음주운전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피고 명의로 이 사건 자동차를 이전한 것이고,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E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의 위 주장이, 피고가 E에 대하여 가지는 대여금 채권의 대물변제로 이 사건 자동차 명의를 이전한 것이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라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의 전부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어느 특정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여 양도하였다면 그 채권자는 다른 채권자에 우선하여 채권의 만족을 얻는 반면 그 범위 내에서 공동담보가 감소됨에 따라 다른 채권자는 종전보다 더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이는 곧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해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따라서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을 채권자들 가운데 어느 한 사람에게 대물변제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사해행위가 된다(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7320 판결,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7873 판결 등 참조).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E의 재산 상태, 피고와 E 사이의 관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가 제출한 을제4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나타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주장과 같은 동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이 반복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 방법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행위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마쳐진 소유권이전등록을 말소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한다.

판사 이금진

별지